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5 선고 2019가단160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, 장지혜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9. 11. 13.

판결 선고2020. 1. 1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53,715,967원 및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6. 28.부터 2019. 5.

1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,805,336원에 대하여는 2018. 7. 1.부터 2019. 5. 1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16,666,666원 및 이에 대한 2018. 5. 29.부터 2020. 1. 1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-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보충하는 청구원인'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53,715,967원 및 그 중 학교법인 D 관련 대위변제금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. 6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. 5. 1.까지 약정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인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정이율인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서울대명초등학교 관련 대위변제금 2,805,33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. 7. 1.부터 2019. 5. 1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인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정이율인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학교법인 D 관련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50,000,000원 중 1/3인 16,6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. 5. 29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. 1. 1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인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피고 B는, 자신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 C이 실질적인 영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학교법인 D와의 계약서에 피고 B의 서명, 날인이 존재하고, 피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

이용한 전자문서 형태의 각 보증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(설령 피고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정동주

별지